

C O N T E N T S

헤드라인

1

EU REACH 논쟁은 내년에도 계속될 듯

해외동향

2

- ▶ 유럽의회, 배터리 생산자 재활용책임 강화 요구
- ▶ EU, 회원국 녹색공공조달 실행방안 마련중
- ▶ 중국, 지방정부의 경차 제한조치 폐지 방침
- ▶ 미국 주정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확산
- ▶ POPs 협약 규제대상 5개 물질 추가 검토
- ▶ 뉴욕주, 공공기관 바이오 연료 사용 의무화 추진
- ▶ 일본, 화심법 제종 특정화학물질 추가 지정 검토
- ▶ 미국, 15개 가정용 및 상업용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기준 공표

새 간행물

6

▶ WEEE 지침 회원국 이행현황 보고서 최신 버전 발간

주요단신

7

- ▶ 중국, 특정가소제 함유 PVC랩 사용 금지 긴급조치
- ▶ 미국 EPA, 항공기 NOx 배출기준 강화
- ▶ 일본, 그린구입법 특정 조달품목에 CD 등 추가 예정
- ▶ 독일, EEE 재고물량 고려해 생산자 등록 올해 말까지 유예

관련 국제회의 정보

8



EU REACH 논쟁은 내년에도 계속될 듯

- 물질사용 승인규정 핵심 쟁점사안으로 떠올라 -



유럽의회가 지난 11월 17일,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법안을 1차 독회하고 표결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의회가 제시한 수정안은 화학물질 등록규정 완화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 승인규정 강화로 요약된다.

40여개 기존 법규를 대체하고, 화학물질 관리청 신설을 통해 EU 차원의 단일 통합화학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될 REACH법안은, 3만여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시험분석을 의무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등록규정과 관련하여 의회 수정안은 소량 생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의무사항을 간소화하는 대신, 기존 화학물질 중 잠재적 유해영향이 큰 물질을 타겟으로 시험분석 의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등

록규정 완화는 이미 집행위원회도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고, 또한 현 EU 의장국인 영국이 회원국간 의견 절충을 위해 제안한 절충안을 대부분 지지하는 각료이사회 입장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 등록규정의 경우 최초 집행위의 안보다는 완화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해물질 사용 승인규정의 경우, 대체물질 또는 대체기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잠재적 위험이 높은 물질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강화된 수정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각료이사회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남은 법 제정 절차에서 물질사용 승인규정이 핵심 쟁점사안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전체표결에서 의회는 적용범위, 그리고 화학물질관리청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제시했다.

의회 표결결과 각 이해관계자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고 있다. 화학산업계에서는 완화된 등록규정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강화된 승인규정에 대해 업계 경쟁력 보호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OSOR (one substance, one-registration) 하에서의 공동등록 및 자료공유에 대해 특정기업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2면 하단에 계속)



유럽의회, 배터리 생산자 재활용책임 강화 요구

EU 배터리지침 개정안 [COM(2003) 723 final]에 대한 유럽연합의 2차 독회가 시작됐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위원회 표결을 거쳐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목표율을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의회 전체의 2차 독회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수정안에서 환경위는 회원국에 대해 개정지침 발효 후 6년부터 폐배터리 회수율을 사용량의 최소 40% 이상, 그리고 10년 이후부터는 60% 이상 달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각료이사회 공동입장보다 해당규정을 강화했다. 1차 독회에서 각료이사회는 각각 25%와 45% 달성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납 축전지와 니켈카드뮴 배터리(니카드전지)를 제외한 모든 배터리의 재활용 목표율을 55%로 설정해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50%보다 강화했다. 반면, 납 축전지와 니카드전지 재활용 목표율은 이사회가 제안한 기준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배터리에 포함된 납과 카드뮴을 초과비용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재활용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달성 목표치를 조금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제시된 환경위 수정안은 Blockland 의원이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배터리 개정안의 강화를 주장했던 Blockland 제안 중에서 중금속 사용과 관련해 휴대용 배터리의 납 사용 금지와 모든 산업용 및 자동차용 니카드전지에 대한 폭넓은 사용금지 규정은 부결됐다.

환경위가 규정을 강화시킨 배터리 회수율의 경우, 의회 내 제1당인 국민당 측이 각료이사회가 공동입장에서 제시한 목표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의회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많은 반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련 산업계 단체인 EU 주재 미상공회의소는 2차 독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배터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미상공회의소 측은 개정지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대한 회원국의 경험과 현 시스템의 효율 및 소비자 인식을 고려해서 목표율을 설정할 것을 주문하고, 약 30% 정도의 회수율을 적당한 목표치로 제시했다.

출처 | EU 집행위, 유럽의회 등

구분	집행위 초안	1차 독회 후 이사회 공동입장		2차 독회 환경위 수정안	
		발효 후 3년	발효 후 6년	발효 후 10년	발효 후 6년
회수율	1인당 연간 160g (또한 니카드전지의 경우 80%)	25%	45%	40%	60%
재활용률	납축전지	65%	65%	65%	
	니카드전지	75%	75%	75%	
	기타 배터리	55%	50%	55%	

〈헤드라인〉에 이어서

있도록 규정한 것을 대기업의 시장독점화를 부추기는 조치라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산업계와 달리, 환경단체 쪽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의장국인 영국은 1차 독회 후, 의회와 각료이사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올해 말쯤 특별 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소집해 조속히 법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

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1차 독회를 끝으로 두 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2차 독회가 내년에 진행되어, 최종 법규 채택은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쯤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출처 | 유럽의회, Euractive, 그린피스, CEFIC 등



EU, 회원국 녹색공공조달 실행방안 마련중

EU 역내 매년 공공조달 규모는 GDP의 약 16%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공부문 구매력을 활용하여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녹색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EU의 녹색조달 추진노력은 통합 제품정책(IPP)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IPP에 따라 각 회원국에게 2006년까지 공공부문 녹색조달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련해서 집행위는 공공기관 녹색조달 지원을 위한 핸드북을 2004년에 발간한 바 있다.

환경총국은 5개 유럽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의 녹색 공공 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 촉진을 위한 실행도구 개발 및 녹색조달 적합 품목에 대한 환경기준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말 영국정부 주최 컨퍼런스에서 집행위는 해당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7개 회원국만이 모범적으로 녹색조달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영국이 포함됐다. 이들은 작년 공공부문 주요 입찰 중 40~70% 정도를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진행했다.

연구보고서는 녹색조달을 모범적으로 추진중인 7개 회원국

과 나머지 회원국의 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녹색조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 요소를 도출했다: 정부차원의 지원 및 국가 녹색조달 프로그램 시행, 제품 전과정 비용 고려, 교육프로그램 시행, 구매기관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등. 나머지 18개 회원국의 녹색조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권고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는 먼저, 7개 회원국의 경험(전략 및 실행도구)을 토대로 각 회원국이 자국 녹색조달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종류별로 서로 다른 타겟을 설정하고, 각 입찰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환경기준 및 녹색조달 우선대상 12개 품목(하수 및 폐기물 처리서비스, 종이, 인쇄업, 사무기기, 가구, 운송기기 등)을 제시했다.

최종 연구결과는 내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2006.4.3~4.4)에서 발표된다. 여기에는 GPP 모범사례와 기술요건, 제품 전과정 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GPP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회원국을 위한 권고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향후 현재의 GPP 웹사이트를 확대·개편해서 녹색조달 전략 및 조달시 고려 가능한 환경기준 마련을 위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 | EU 집행위



중국, 지방정부의 경차 제한조치 폐지 방침

연비개선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일부 지방정부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저배출 소형엔진차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한조치를 폐지할 방침이다. 국가개혁발전위(NDCR) 산업 정책국장 Liu Zhi가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중국/아시아 청정연료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Liu 국장은 또한 저배출 차량이 반드시 연비가 좋은 것은 아니므로, 새로이 마련되는 법규에서는 경제적인 차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NDCR 등 중앙부처가 소형엔진차량과 대체연료 및 연비가 좋은 차량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국가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과 모순되는 정책들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어, 이번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특정구역에서의 운행제한, 차량 등록제한 등 경차에 대해 제

한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베이징시, 상하이시, 하이룽강성의 따징시, 장쑤성의 쑤저우시 등 22개 자치성의 84개 도시가 포함된다.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각각 배기량 1리터 이하인 차량의 특정구역 운행금지과 1.2리터 이하인 차량의 시내 고가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따징시는 택시 엔진배기량을 1.6리터 이상으로 제한하고, 쑤저우시는 1리터 이하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몇몇 자치단체의 경차 제한조치에 대해 차이나 데일리 등은 연료소비량 및 배기가스 배출량이 더 적고, 주차공간도 덜 차지하는 경차가 좀더 경제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꼬집고,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이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으로서,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인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차 제한조치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출처 | Green Car Congress, 차이나 데일리



미국 주정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확산



미국 개별주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제정이 잇달아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차량 배기가스 관리정책

을 추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2002년 통과된 법안(AB 1493)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2004년 6월에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칙을 제안했다. 올 9월에 해당 규칙이 최종 채택되어 지난 10월 21일 발효됐다. 이 규칙은 2009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약 22%, 2016년까지 약 30%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대상차종의 연도별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LEV (Low Emission Vehicle)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연방정부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서 개별 주정부의 강화된 법

규제정을 허용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LEV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시행중인 뉴욕주와 버몬트주도 올 11월 한달 사이에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동일한 규칙을 잇달아 제정했다. 대기정화법에 따라 개별주는 연방기준을 따르거나 또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LEV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다.

지난 11월 10일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제정을 발표한 뉴욕주 환경보전국(New York Department of Environment Conservation)에 따르면, 해당 규칙 시행으로 중소형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2020년까지 약 천4백만톤, 그리고 2030년까지 약 2천6백만톤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캘리포니아 대기지원국, 뉴욕주 환경보전국 등

→ POPs 협약 규제대상 5개 물질 추가 검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 근거하여 현재 12개의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규제대상에 새로운 물질 추가여부 검토작업을 위한 제1차 POPs 심의위원회 11월 7~11일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협약 규제대상으로 검토한 화학물질은 살충제인 chlordecone, 난연제인 hexabromobipheny, 금속도금 및 코팅제 등으로 널리 쓰이는 perfluorooctane sulfonate (PFOS) 등 5개 물질이다. 협약의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해당물질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적인 사용만이 허용된다.

POPs 심의위원회는 추가 규제대상으로 제안된 화학물질이 동 협약에서 설정한 스크리닝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차 회의는 그 첫 단계로 이들 화학물질이 확실히 POPs인지 여부 즉,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잔류하고 인체 및 동물 체내에 축적되며, 또한 월경이동을 통해 인체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각국 정부 및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근

거로 각 POPs에 대한 위해성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위원회는 국제적 행동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특정용도에 대해 적용면제 허용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약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협약을 비준한 각 당사국에 송부되어 정식 결정이 내려진다. 제2차 심의위원회는 2006년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톡홀름 협약에서 규제대상으로 지정한 12종의 POPs에는 9종의 살충제(aldrin, chlordane, DDT, dieldrin, endrin, heptachlor, hexachlorobenzene, mirex, toxaphene)와 2종의 산업용 화학물질(PCBs 및 hexachlorobenzene), 그리고 비의도적 부산물인 다이옥신(dioxins)과 퓨란(furans)이 포함된다. 이들은 신경 및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다.

출처 | 유엔환경계획(UNEP)



뉴욕주, 공공기관 바이오 연료 사용 의무화 추진



지난 11월 20일, 뉴욕주 파타키 주 지사가 모든 주립 기관 및 공공기관의 난방연료와 자동차연료 등에 바

이오 연료사용을 요구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는 뉴욕주가 바이오 연료 생산을 증가하고, 에탄올 등 바이오 연료 시장 확대, 그리고 외국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등을 위해 마련한 포괄적 계획에 따른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2007년까지 주립차량에는 2% 이상의 바이오 디젤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2012년부터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 내의 에탄올 연료추진소 접근성 개선 및 그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이 시행령은 주립 빌딩에 사용되는 난방연료의 5% 이상을 바이오 디젤 등 생분해 연료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뉴욕의 에너지 연구개발원(NYSERDA,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바이오 정제소의 건설을 촉진하는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내년 안에, Fulton의 북동부 지역 등에서 3개 에탄올 공장이 청정연료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북동부 지역의 바이오 연료 공장은 연간 1억 갤런 정도 생산이 가능한 규모가 될 것이다.

농산물 및 유기폐기물 등에서 추출하는 바이오 연료 사용 촉진정책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분야 활성화의 목적도 있다. 이런 정책은 이미 EU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EU는 바이오 연료지침을 2003년 채택하여 회원국에 대해 운송부문의 바이오 연료 단계별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2%, 그리고 2010년까지 5.75%를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원국은 지침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시 객관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출처 | NYSTAR, EU 집행위



일본, 화심법 제1종 특정화학물질 추가 지정 검토

지난 11월 18일, 일본 환경성, 경제산업성 및 후생노동성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에 따라 화학물질 장기독성관련 합동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 결과, 벤조트리아졸계 자외선 흡수제(UVA, UV absorber) [2-(2H-1,2,3-benzotriazol-2-yl)-4,6-di-tert-butylphenol (CAS No. 3846-71-7)]가 '지속적으로 섭취될 경우,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 가능성'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지 등에 혼합해 사용하는 벤조트리아졸계 UVA는, 플라스틱 건축재나 열승화성 전사형 사진의 코팅 수지 제품에 사용된다. 이미 2004년 화심법에 따라 제1종 감시 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제조수입량 신고 및 필요시 유해성 조사 등의 규제 대상이 되는 물질이다. 현재 화심법에 따라 22개 물질이 제1종 감시 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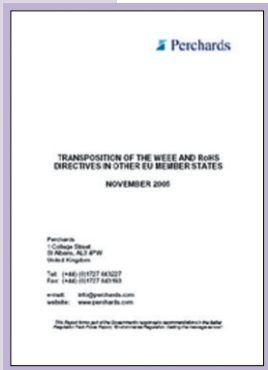
후생노동성 등은 이번 해당 물질의 장기독성 심의결과를 근거로 해당물질에 의한 장기독성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시험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에 대해 해당물질 제조,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해당 물질의 향후 취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물질을 화심법에 근거해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해 규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화심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심의회가 해당물질을 화심법에 근거한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지으면 지정절차가 진행된다.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되면, 제조수입 허가제, 특정용도 이외 사용금지, 그리고 시행령에서 지정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등의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화심법에 근거해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15종이다.

출처 | 일본 환경성



➔ WEEE 지침 회원국 이행현황 보고서 최신 버전 발간



올해 8월 13일을 기점으로 폐전기전 자처리지침(WEEE)에 의해 생산자의 무가 부여됨으로써, 이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실질적 대응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2005년 11월 현재 25개 EU 회원국 대부분이 WEEE 국내 이행법 제정을 마무리했고, 영국을 포함한 4개국만이 아직 국내 이행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지난 8월, 자국의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기반 구축 미비를 이유로 지침 이행을 2006년 6월로 연기한 바 있다.

시장단일화(EC조약 제95조)를 법제정 근거로 하는 RoHS 지침과 달리 WEEE 지침의 경우 환경보전 우선(EC조약 제175조)을 근거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지침보다 엄격한 자국법 제정을 허용하고 있다. 즉, 25개 EU 회원국별로 WEEE 지침 세부 의무사항 이행에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이런 상이한 규정에 대한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하다.

대부분 회원국의 WEEE 지침 국내 이행법 제정이 마무리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관련 업계가 EU 회원국별 상이한 규정과 생산자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실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법률 정보제공 및 분석기관인 Percharads사는 영국 무역 산업부(DTI)의 위탁을 받아 회원국 WEEE 및 RoHS 지침 이행현황을 정리 분석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최근의 회원국별 WEEE 및 RoHS 지침 이행현황을 정리한 7번째 보고서인 2005년 11월판 Percharads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을 제외한 24개 회원국별 WEEE 이행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자 의무사항과, EEE 등록처,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비용, 법률시행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Percharads, Arrow Electronics Inc.

< 해외동향 에 이어서 >



미국, 15개 가정용 및 상업용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기준 공포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0월 18일, 가정용 및 상업용을 포함하는 15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15개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기준 제정은 지난 8월에 채택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에 따른 후속조치다.

에너지정책법은 에너지효율과 관련해서 연방차원의 에너지정책을 포괄적으로 개정한 법으로, 지난 8월 8일 부시 대통령이 최종 사인함으로써 발효됐다. 이 법은 제품 및 공공기관 건물의 에너지효율, 재생가능에너지, 자동차, 전력생산 등 자원 및 에너지효율 관련 분야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시행중인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상업용 및 소비자제품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은 부시 행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 목표이며,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준 제정이 미국 전체의 에너지 소비

를 절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에너지부는 밝혔다.

이번에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준이 마련된 15개 품목에는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5개 품목(형광램프용 안정기, 환기팬 및 조명기구 부착 환기팬(ceiling fan and ceiling fan light kits), 플로어 램프(torchier), 일반 형광램프(medium base fluorescent lamp), 제습기)과 10개 상업용 및 산업용 전기전자제품 [비상구표시등, 건식 배전용변압기(dry-type distribution transformer), 교통신호등, 상업용 냉동·냉장고, 상업용 세탁기, 수은가스용 안정기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 플로어 램프와 환기팬, 제습기, 상업용 냉동·냉장고, 상업용 제빙기 등은 연방차원의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이 이번에 처음 마련된 것이다.

또한 DOE는 에너지정책 개정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2006년 1월 31일까지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개선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출처 | 미국 DOE

중국, 특정가스제 함유 PVC랩 사용 금지 긴급조치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이 DEHA를 함유하는 식품용 PVC 포장랩에 대한 긴급 금지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이것은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44종류의 PVC 식품포장용 랩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추출 검사에서 환경호르몬인 DEHA가 검출됨에 따른 조치다. DEHA는 PVC 제조시 가스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중국정부는 2003년 제정한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 사용 위생표준'에 따라 65종의 사용 가능한 가스제 리스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이다. 즉각적으로 발효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식품용 PVC 포장 랩 생산업체는 제품포장 시 원료와 제품 사용가능범위 등을 명기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DEHA를 식품포장 랩에 사용한 생산자에게는 즉각적인 조업 중단조치가 내려지고, 모든 제품을 회수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이번 금지조치는 국가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PVC 포장재의 수출로 까지 확대된다. 한편, 우리 나라는 올 6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함으로써, 수입 랩 및 국내 제조 식품포장 랩에 DEHA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출처 | Intertek Labtest

미국 EPA, 항공기 NOx 배출기준 강화

미국 EPA가 신규 항공기의 NOx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월 17일 개정 공표된 NOx 배출기준은 상업용 항공기 엔진에 대한 기준으로, 소형 국내용 제트기에서부터 보잉 747기 및 이보다 더 큰 대형 항공기까지 그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상업용 항공엔진을 장착한 개인 항공기 및 군용

항공기 역시 개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번의 상업용 항공기 엔진 NOx 배출기준 개정으로 미국 기준이 2004년에 발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개정된 NOx 배출기준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 미국 EPA

일본, 그린구입법 특정 조달품목에 CD 등 추가 예정

일본 환경성은 '그린구입법'에 따라 중점적으로 조달을 추진할 품목(특정 조달품목)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

그린구입법의 특정 조달품목 및 그 판단기준을 정한 기본방침은, 물품의 개발 및 보급현황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가 실시된다. 2001년 약 50개 품목이 지정된 이후, 2002년에는 24개 품목, 2003년 23개 품목, 그리고 2004년에는 6개 품목이 추가로 특정 조달품목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공표한 2005년 검토안은 접수된 약 330건의 제안을 기초로, 기록용 미디어(CD-R, DVD±R)와 일차전지, 소형 충전지를 특정조달품목으로 추가하는 것과, OA필터, 환경친화형 도로조명 등 기존 품목의 판단기준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 일본 환경성

독일, EEE 재고물량 고려해 생산자 등록 올해 말까지 유예

WEEE지침의 독일 국내 이행법에 따라 등록시한인 지난 11월 24일까지 생산자 등록 대상 생산자는 약 1만개 업체로, 이중 약 40%가 등록기관인 EAR (Elektro-Altgerate Register)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등록되지 않은 생산자의 전기전자제품(EEE) 역대 판매에 대해서는 최대 EUR 50K(약 6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재고물량을 고려하여 환경담당 주무기관은 EAR로 하여금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Perchards

공 지 사 항

-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친환경상품진흥원」내 TEN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TEN 온라인정보시스템(www.ten-inf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환경마크협회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년 9월 9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국제회의 정보

- ① 11.29. ~ 12. 2. 국제 환경산업 박람회 'Pollutec 2005' (프랑스 파리)
- ② 12.5. REACH의 효과적 실행방안을 위한 컨퍼런스 (벨기에 브뤼셀)
- ③ 12.13 ~ 12.18. 제6차 WTO 각료회의 (중국 홍콩)
- ④ 12.15 ~ 12.17. 일본 친환경상품전시회(Eco-Products Japan 2005) (일본 동경)
- ⑤ 1.18. ~ 1.20. 국제 전자기기 재활용 회의 (독일 함부르크)
- ⑥ 1.22. ~ 1.25. EU EC 2006 (Electric Utility Environmental Conference) (미국 투손)
- ⑦ 1.23. ~ 1.29. 개발도상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한 워크숍 (코스타리카 Rancho Matatal)
- ⑧ 1.24. 산업계의 WEEE 규칙 이행준비를 위한 워크숍 (영국 런던)
- ⑨ 1.26. ~ 1.27. 제2회 폐기물관리 재정 포럼 (영국 런던)

2005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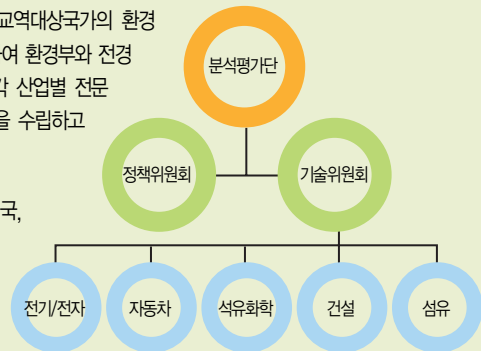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1				2	
7	8	9	10	11	12	13
						3
14	15	16	17	18	19	20
	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06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	
20	21	22	23	24	25	26
		6	7	8		9
27	28	29	30			

TEN시스템운영체제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 규제 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네트워크 운영은 친환경상품진흥원, KOTR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친환경상품진흥원,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전 화 : 02-358-6800(#232) | 팩 스 : 02-358-8560 | 이메일 : jung60@koeco.or.kr